
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21. 11.

농림축산식품부
(농 촌 산 업 과)

1. 개정이유

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법령 정비에 따라 '20년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신산업 육성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 등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

2. 주요내용

- 농촌융복합 사업자 갱신 절차 사전안내 기간을 3개월 전에서 4개월 전으로 변경(안 제4조제6항)
-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인증 승계 및 인증 갱신 기간을 연장하여 충분한 신고 기간 확보 필요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
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6항 본문 중 “3개월”을 “4개월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인증의 갱신)① ~ ⑤ (생 략)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<u>3개월</u> 전까지 사업자에게 갱신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, 팩스, 전화 또는 문서로 할 수 있다.	제4조(인증의 갱신)① ~ ⑤ (현행과 같 음)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<u>4개월</u> 전까지 사업자에게 갱신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, 팩스, 전화 또는 문서로 할 수 있다.